

의약품 판매자가격표시제도 실시 이후

# 약값, 얼마나 올랐나?



**요즘** 약의 겉포장을 보면 업체에서 제시하는 가격 대신 약국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가격표가 붙어있다. 올해 초부터 실시된 의약품 판매자가격 표시제 때문이다.

작년까지는 업체에서 가격을 매기는 표준소매가격제도를 시행해 왔다. 표준소매가격제도는 거래 질서 문란을 막고 의약품 및 약사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84년부터 실시되어 왔다.



언젠가부터 약값이 올랐다는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약국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판매자가격표시제도가 실시되면서 제약회사들이 의약품의 공급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 판매자가격표시제도 이후 의약품의 가격 변화와 그 원인을 알아본다.

- 조사/여출업(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
- 정리/임은정(소비자정보국)

그러나 이 제도가 약국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의약품의 재판매 가격 유지를 보장하는 장치로 악용되기 시작했다. 정해진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의약품이 판매되는 등 더 이상 표준소매가격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자 약국에서의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도가 올해 초부터 새롭게 도입되었다.

그러나 판매자가격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 일부 언론과 소비자로부터 의약품 가격이 예전보다 비싸지고 약품의 출하 가격도 무분별하게 인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대도시의 69개 대·소형 약국을 대상으로 제도가 바뀌기 전과 후의 의약품 가격을 비교·조사했다.

조사 대상 의약품은 97년 생산 실적이 높은 19개 품목이며 99년 4월을 기준으로 출하 가격이 인상된 제품으로 선정했다.

## 판매자가격표시제도 실시되면서 제약업체들이 공급 가격 인상시켜

98년말 표준소매가격제도를 시행할 때와 비교해보면 99년 5월 19개의 의약품 가격은 평균 2.3% 인상됐다. 대형 약국과 소형 약국의 인상률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대형 약국의 소비자 판매 가격은 평균 7.5% 인상된 반면 소형 약국은 평균 0.3% 인하됐다.

약국이 업체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가격(사입 가격)은 98년말 대비 99년 5월 기준으로 평균 10.6%가 올랐는데 대형 약국의 사입 가격은 평균 11.8%, 소형 약국은 평균 9.8% 인상됐다.

대형 약국의 소비자 판매 가격이 7.5%로 소형 약국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대형 약국의 특성상 소형 약국에

비해 소매 마진이 낮아 사입 가격 인상(11.8%)이 판매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소형 약국은 의약품 사입 가격이 9.8%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비자 판매 가격은 0.3% 하락했다. 판매자가 가격표시제도가 실시되면서 약국간의 가격 경쟁이 심해져 기존의 판매 마진을 많이 줄이다 보니 가격이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의약품의 소비자 판매 가격이 인상된 주요인은 제약업체에서 의약품 출하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약국의 의약품 소매 마진률은 99년 5월, 평균 16.7%로 98년 말의 27.1%보다 약 38.4%(10.4%P) 감소했다. 대형 약국의 의약품 소매 마진율이

9.8%에서 5.3%로 약 45.7%(4.5P) 감소했고 소형 약국의 마진율은 37.2%에서 23.4%로 약 39.5%(13.8P) 줄어들었다.

약국의 소매 마진 감소는 판매자가 가격표시제 도입으로 대형 약국 간에, 또 는 대형 약국과 소형 약국 간에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약업체 마음대로 가격 인상해도 이를 제재할 장치 아무것도 없어**

의약품 판매자가 가격표시제의 목적은 최종 판매자인 약국이 의약품의 판매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서 최종 판매자간의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의약품을 공급하게 하

는 것이다.

그러나 제약업체들이 판매자가 가격표시제로의 전환을 기회삼아 일제히 의약품의 공급 가격을 인상하여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다.

이전에 있던 표준소매가격제도 는 제약업체에서 공장도 가격을 결정하여 제약협회에 신고하면 제약협회 내의 '의약품가격관리위원회'에서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제약업체에서 신고한 공장도 가격이 심의에 통과되면 제약협회는 공장도 가격과 유통마진율(30%)을 더한 가격을 정해 표준소매가격을 결정하여 제약업체에 통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제약업체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가격을 조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 초 의약품의 표준소매가격제도가 폐지되면서 제약업체의 의약품 출하 가격에 대한 심의 절차가 없어져 시장에서 독점적인 공급 체제를 가지고 있거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목의 경우 공급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의약품은 일반 소비재 상품과 달리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상품인 만큼 현재의 의약품 가격 제도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의약품 소매 가격을 최종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표시·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되, 독과점 품목이나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품목 등에 대해서는 공급 가격의 일방적 인상을 통제할 수 있도록 수요자(약국), 공급자(제약사), 소비자 대표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가칭 '의약품 출하가격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약품 가격이 적정하게 매겨지도록 하는 등 올바른 가격 결정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98년말 대비 99년 현재 의약품 판매가격**

(단위 : 원, %)

약 품 명	소 형 약 국			대 형 약 국		
	98년말 (A)	99년현재 (B)	증감율 ((B-A)/A)	98년말 (A)	99년현재 (B)	증감율 ((B-A)/A)
박카스F액	305	298	-2.3	264	284	7.7
케토톱플라스타	2,734	2,529	-7.5	2,135	2,187	2.4
원비디	429	389	-9.4	301	294	-2.3
아로나민골드	11,821	13,154	11.3	10,400	11,988	15.3
스포르낙스 28C	48,588	49,525	1.9	38,378	41,111	7.1
캡셀 200C	321,111	331,111	3.1	245,842	274,211	11.5
광쌍탕F	381	314	-17.6	192	180	-6.6
슬표우황침심환	3,487	2,942	-15.6	2,330	2,300	-1.3
까스활명수Q액	402	369	-8.2	279	280	0.4
트라스트패취	3,721	3,367	-9.5	2,871	2,871	0.0
구론산바몬드S액	433	395	-8.8	294	287	-2.3
까스명수	391	352	-10.0	253	258	2.2
인사돌정	27,659	27,756	0.4	24,144	24,817	2.8
노마F	11,829	11,816	-0.1	9,640	10,364	7.5
써스펜좌약	2,035	2,427	19.3	1,626	2,113	29.9
웨스탈포르테정	22,615	24,051	6.3	19,020	21,080	10.8
콘택600	11,321	15,897	40.4	8,696	12,904	48.4
속청	422	395	-6.4	268	265	-1.2
겔포스	16,785	17,323	3.2	14,263	15,671	9.9
마이보라	5,654	5,886	4.1	4,523	4,873	7.7
총 계	-	-	-0.27	-	-	7.49